

●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753호

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9개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하는 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2일

보건복지부장관

**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법」 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9개
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·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(법률 제21490호, '26.3.24. 제정, '26.10.2. 시행)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491호, '26.3.24. 제정, '26.10.2. 시행)됨에 따라,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「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」 등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소관의 9개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- 전자우편 : min951@korea.kr

- 팩스 : (044) 202 - 3930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 (044) 202 - 2277, 팩스 (044) 202 - 393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